

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0. 11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개정사유

- 행정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요소가 강하고 애매 모호한 성격의 규제조항을 폐지하고자 함

주요내용

-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제9조4호로 “군에서 필요로 할 때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” 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요소가 강하고 애매 모호한 성격의 규제조항으로 폐지하여 행정규제를 완화 하고자 함.

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첨부
2. 신구조문대비표 : 첨부

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호를 삭제한다

유통산업발전법

제2절 정기시장등

제16조 (정기시장등의 개설등)

- ①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개설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·시설기준 및 운영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·군 또는 구(자치구를 말한다)의 조례로 정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개정안
<p>제9조(허가 취소 등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. 제5조각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.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. 군에서 필요로 할 때 	<p>제9조(허가 취소 등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.</p> <p>1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삭제></p>